



현 여건하에서 서울시가 생계단속을 할 경우

지난 1976년도 축산물 처리법 제2조2항 단서에 의한 농수산부고시 제2698호로 7개 지역을 고시하여 생계유통규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를 경험한 당국이나 부로일러 처리공장 생계상인 생산자 소비자 이에 관계된 모든 분야에 속한 분들 나름대로의 어려움은 표현키 힘들 정도로 많았다고 하겠습니까. 그때 부산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 중에서 특히 서울 경기 일원이 더욱 심한 타격을 받은 바 있었던 것입니다. 생산지에는 체화 물량으로 인한 가격 하락, 유통마비, 소비위축, 도계시설 부족, 등에서 오는 막대한 손실을 감당키 어려워 서울을 중심한 경기일원에 걸친 생산지 단지장들을 중심으로 전생산자는 관계요로에 진정 건의를 하면서 뛰었고 학계의 관심있는 분들은 어려운 현실을 관계 당국에 반영해주시는데 힘을 다해주셨습니다. 이와같은 노력은 드디어 국회 청원에 의한 방법으로 전환점을 세워 두고 각단지장들은 지역대표자라는 사명감에서 뭉쳐서 뜻을 관철 시킨 바 기억에도 새로운 1976년12월 15일 국회농수산 분과 위원회의 결정으로 본규정에서 유보조치되어 질식직전에 놓여

있던 생산자는 다시 생기를 찾아 체화물량이 소비회전 되는 계기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과과정에서 때로는 생산자와 반대되는 분야의 오해로 투서 고발 분쟁 등,여러가지 쓰라림을 겪은 필자와 뜻을 같이 했던 동료단지장들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일들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본법의 근본목적과 제도는 찬동하나 여건조성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의 강행이 앞선데서 온 부작용이라 보겠습니다. 그후 유보조치의 시한은 가고 다시 지역고시의 소생으로 1979년도 부터 서울시 중구 중구 일부지역이 생계단속과 동시에 도계유통 지역으로 전환 시킴과 아울러 처리공장의 수적 보충수단으로 서울시 당국은 서울시관할 13개구청 지역 시장일원에 걸쳐 간이도계장 형태로 생계상들의 실정을 감안한 시설기준에 의거 허가 해주기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법, 시위생법, 주거지역, 상업지역, 해아릴 수 없는 장벽에 부딪혀 대부분의 허가서류가 반려되고 불과 두 세곳 밖에 된곳이 없는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유격전법에 의하면 지피지기「知波知己」는



박 병 희

(본회 육계분과위원장)

백전백승 한다는 말과 같이 1976년도 와 오늘의 여건을 비교해 본다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 보겠습니다. 1976년도 도계유통 당시 서울경기 일원에 허가된 처리공장 및 간이도계장을 합한수는 대형 2개소 소형 13개 도합 15개소였고, 오늘의 도계처리장은 대형 2개소, 소형 8개소 정도로서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산물량은 76년도 보다 두배로 늘었다고 보면, 과연 당시보다 줄어든 처리능력으로 처리불능이라는 답은 나오는 것입니다. 소비측면으로 볼때 서울시 13개구청 관할의 점포수 1024개소가 800만 서울시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형편이면서 처리물량 소비창구 점포는 불과 100개소 미만으로는 부족함이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1976년도 15개 도계장에서 처리능력은 일 7만수이나 처리품에 대한 소비부진으로 일 처리능력 2,000수에서 머문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계로 서울시민에게 공급되는 물량은 최대 25만수에서 최하 7만수가 공급되고 있는 시점을 감안할때 부족한 처리공장 현재의 능력으로는 공급불능이라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979년 10월 11일 현재 생계유통과 도계유통이 병행하는 시점에

면서도 생산지 추석물량이 아직 출하를 못하고 아울러 성장되는 후속 물량이 가중되어, 실제화물량은 140만수를 돌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돈육가격의 하락 영향으로 육계kg당 300원에서 350원을 하는 불황경기 와 소비대책 없는 시점에 도계유통을 강행 하는 경우 법집행의 어려움은 물론 생산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우려가 발생된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좋은 법의 운영을 다하고 위생적인 도계품이 유통되게 하는 지름길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소모 20만수를 처리할 수 있는 도계처리장을 설치되도록 하고 관습에 의한 생계유통소비를 소비를 위생적인 도계품으로 원하도록 하는 소비풍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이 병행되어야 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생산통계가 소비통계에 따를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인 뒷바라지 없이는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하더라도 오직 혼란만이 초래 하는 결과만 있을것으로 판단 됨으로 시행당국의 제고를 촉구하면서 우리도 하루속히 선진국과 같은 위생적인 유통이 될날을 기대해봅니다.